

표준 관리	적용 범위	표준 책임팀	적용 일자	검토 주기
	공통	HSE팀	2024.05.20	1회/2년
목적	이 지침은 경창산업(주)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업무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책임 및 절차에 대해 적용된다.			
성과관리	관리지표	산출기준	주기	비고
제·개정 사유	ISO 45001 & 14001 요구사항에 따른 최초 제정			

1. 업무 FLOW CHART

해당사항 없음

2. 용어의 정의

NO	용어	정의
1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 물질(먼지, 포름알데히드, 총탄화수소류 등), 약취 등을 말한다.
2	특정대기유해물질	사람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의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시안화수소, 납, 크롬, 비소등)을 말한다.
3	지정약취물질	약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자일렌 등)을 말한다.
4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도장시설, 탈지시설 등)를 말한다.
5	대기오염 방지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세정, 흡착, 연소시설 등)을 말한다
6	제 1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7	제 2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8	제 3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9	제 4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10	제 5 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11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의거 사업장에서 선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

### 3. 책임과 권한

#### 3.1 HSE팀

- 1)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규 정보 검토 및 유관팀 전파
- 2)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 보고 및 관리
- 3) 배출, 방지시설 운영 모니터링
- 4) 법적선임자(환경기술인) 또는 담당자 선임 검토 및 보고, 기록관리
- 5) 대기환경보전법관련 법적 선임자 및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운영관리
- 6) 대기오염물질 적법처리 유무 검증 및 배출허용/운영기준 준수 점검
- 7) 대기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인/허가 관리

#### 3.2 환경기술인

- 1)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총괄
- 2) 배출 및 방지시설 변경시 법적사항 확인 요청
- 3)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 일상점검을 진행하고 매일 1회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0H-0101-01) 에 기록관리 해야 한다
- 4)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 5)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공정개선
- 6)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검토 및 조치
- 7) 자재(약품 및 원료) 변경사항에 대한 지원부문 통보

### 4. 상세 업무절차

#### 4.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공사주관팀은 설치시 HSE팀에 사전통보하고 HSE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설치 및 변경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1)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변경) 내역
- (2) 설치/변경사유 및 기대효과
- (3) 계획된 방지시설 형태 및 예상 오염물질 배출농도 등 기술적 자료
- (4) 설치/변경 계획일정 및 기타 참고사항
- (5) 예상 투자비용(직간접 공사비, 인허가 비용 등)
- (6) 배출시설·방지시설 사양서, Lay-Out (관련 도면 포함)
- (7) 사용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 가동시간

#### 4.2 운전 및 유지보수

- 1) 환경기술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첨1) 및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첨2)을 만족하도록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상태로 운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2) 비정상적 운전이 불가피하여 배출허용기준(별첨1) 및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첨

2)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HSE팀과 협의하여 운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3 배출 허용기준의 강화

- 1) HSE팀은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할 시 개선안을 작성하여 해당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개선안을 통보받은 해당팀은 공정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개선 또는 설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4.4 배출시설 · 방지시설 설치(변경) 허가 · 신고

-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2) HSE팀은 외부의 대행업체를 통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3)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시 HSE팀에 내용을 전달하여 배출시설의 목록 업데이트 및 인허가 업무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며, HSE팀은 적합한 방지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5 측정 및 분석

HSE팀은 법적 요건에 충족할수 있는 측정 주기를 선정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4.6 대기오염 배출기준 초과시

- 1) 측정 및 분석 결과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첨1) 및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별첨2)을 초과시 HSE팀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 2)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HSE팀은 해당 원인 및 결과를 파악하여 해당기관(달서구,달성군,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 3) 본 업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다

#### 4.7 법적 선임자(환경기술인) 또는 담당자 임명 및 교육

##### 4.7.1 환경기술인 임명

HSE팀은 배출·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환경기술인 교육 및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

-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에 선임
- (2) 환경기술인을 변경 임명하는 경우 : 퇴사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선임

[표 1]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사업장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	------------

제1종	대기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	대기환경산업기사·환경기능사·3년 이상(대기환경관련 업무를 실시한자 1명 이상
제4종 제5종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자 1명 이상
예외 조항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수있다.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4.7.2 환경기술인 관리사항

-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4.7.3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기술인은 아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결과를 HSE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2]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대상	교육주기	교육기간
· 환경기술인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 최초 :환경기술인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수 :최초교육 후 3년마다 실시	· 4일(28시간) 이내 법기준에 따른 교육 시간 준수 (전문/일반/면제) · 집합 또는 온라인교육 가능

5. 법적, 규제적 및 고객 요구사항

NO	요구사항	비고
1	대기환경보전법	
2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4.2.2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파악	

6. 기록 및 양식

NO	기록 및 양식	양식번호	보존년한	비고
1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0H-0101-01	1년	

7. 개정이력

NO	일자	개정내용
0	2024.05.20	ISO 45001 &14001 요구사항에 따른 최초 제정